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이용권 /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부 실장

1. 자동차충전소에서, 추후 안전거리 내에 보호 시설이 들어올 경우 충전소의 거리 이동 여부

Q 자동차충전소를 4년정도 운영하고 있다. 충전기를 2기 증설하기위해 변경기술검토서를 의뢰하여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를 득한 상태이며 현재 보호시설과의 거리 48m내에 보호시설이 없으므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 그러나 추후 48m 내에 보호시설이 들어온다면 보호시설이 들어온 만큼 충전소 측에서 일방적으로 충전, 저장시설을 옮겨서라도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유지해줘야 하는지 여부와 유지해줘야 한다면 기존충전소나 변경하는 충전소 모두 적용하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위의 내용대로라면 애초에 48m를 보호시설과의 거리가 아니라 사업소부지(안전거리)로 해야 하지 않는지?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동법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당 시설기준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는 충전사업자가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과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기준은 '03. 11. 7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충전시설 등으로부터 사업경계까지의 거리에 1배내지 2배 이내에서 허가관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03. 11. 7이후 변경허가를 받았다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의 규정에 적합해야 할 것이며, '

99. 4. 1이후 '03. 11. 7이전에 허가받은 시설 중 변경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03. 11. 7이후 허가관청이 별도로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의 1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할 경우 동 허가관청의 고시는 종전의 허가 시에만 적용하던 규정과는 달리 안전거리가 강화되는 것인 바, 변경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허가관청에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허가관청에 문의하기 바란다. 동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1)(라)에서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의 1배내지 2배 이내에서 허가관청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충전시설의 설치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허가관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따라서 허가관청에서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허가이후 안전거리 내에 보호시설 설치 시 처리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충전소 허가 예정지가 산림청소유의 지역과 경계를 접할 경우 그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산림청 소유 부지 매입 여부

Q 충전소 허가 예정지의 경우 산림청 소유의 자연녹지, 보존관리지역이 사업소 경계와 접하고 있으며, 충전시설의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24m이상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안전거리 확보를 위하여 산림청 소유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는지?

A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경계내의 부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가)내지(다)의 규정에 적합한 부지로서 자사의 부지중 충전사업소에 귀속된 부지 및 타인의 부지 중 법률상 지상권, 임대차, 사용임대 등을 통하여 사업소 부지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인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자연녹지, 보존관리지역내의 산림청 소유의 부지의 경우 충전소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해당 허가관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3. LPG 충전시설 중 로리용 유체검지장치 사용 여부

Q LPG 충전시설 중 로리용 유체검지장치(일명 Sight Glass)를 사용해도 무방한지?

A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 사용하는 유체검지장치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령에 이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검사대상 가스용품에도 해당되지 않으나,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 사용하는 가스설비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가목(6)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가스의 성질·온도 및 압력 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상용압력 2배 이상의 압력에서 항복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두께를 가져야 하고, 상용의 압력에 견디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하는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자동차충전소의 표준압력계 검정주기에 대한 여부

Q 현재 자동차충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준압력계 2개에 대해 검정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A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기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가목(8)(가)②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2개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교정주기는 귀 충전소에서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 중 검 · 교정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된다.

5. 벌크로리를 소유 시 충전사업자의 명의 또는 회사명의 가능 여부

Q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3제1호가목(15)(나)에 보시면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전용운반차(벌크로리라 한다)를 보유할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충전사업자의 명의로 벌크로리 차량이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액화석유가스 전문수송회사와 수송용역체결을 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해도 되는지?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3제1호가목(15)(나)의 규정에는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전용운반자동차(벌크로리라 한다)를 보유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보유의 의미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벌크로리에 의한 판매사업을 하고자 하

는 자도 벌크로리를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리는 바 이다.

6. LPG충전소에서 주유시설을 증축 시 시설 설치 가능 여부

Q 현재 LPG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충전소부지의 넓이가 안전거리(24m)에 여유가 있어 안전거리 밖에서 주유시설(주유기, 케노피, 지하유류탱크 등)을 설치하고, 사무실과 화장실은 충전소의 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시설의 설치 가능한지?

A 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소 경계내의 부지 내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가목(6)(라)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충전사업소 부지 내에 주유소 시설 및 주유소 사무실을 위한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 다만, 기존 영업 중인 동 충전사업소 부지를 축소하여 최소한의 사업소경계의 안전거리만을 유지하여도 관련사업의 영업을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지 제반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할 행정관청(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7. 주유소와 충전소를 같이 건축하여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경우 조건 여부

Q 주유소와 충전소를 같이 건축하고자 하며, 또한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조건이 있는지?

A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3제1호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경계와의 안전거리 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도 유지하여야 하며, 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소 부지 내에는 동법시행규칙 별표3제1호나목(6)(라)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나 시설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공용사무실은 주유소 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8.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의 오피스텔에 가스 시설 설치 관련사항 질문

Q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저장소용량 10ton정도)의 오피스텔에 가스시설 설치와 관련 다음 사항을 질의 한다.

- 가. 저장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 나. 저장시설을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다. 지상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과의 최소 이격거리

는 얼마인지
라. 인접대지경계선(인접지:나대지)과의 이격거리는 얼마인지

A 가.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자가 70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집단공급시설에 해당하며, 집단공급시설의 저장탱크는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에 설치하거나 저장탱크실을 설치하여 지하에 매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지하층이나, 옥상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다. 라.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 저장설비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4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사업소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과 저장능력별로 12m~30m까지 이격거리(저장능력이 10톤인 경우에는 제1종보호시설과 17m, 제2종보호시설과 12m)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토막
상식

중요한 날이 다가 온다 - D-Day

중요한 날이 다가오면 달력에 계속 표시를 해 나간다. D-Day 10일 전, D-Day 7일 전…….

그런데 D-Day는 대체 무슨 말일까.

'D-Day'에서 D는 decimal의 약자다. decimal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0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군사 용어로 하면 '작전 계획상의 공격 예정일'을 가리킨다. 즉 decimal은 공격을 전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판단하거나, 공격 예정일을 확정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계획을 준비할 때 쓰는 용어다.

공격 예정일이 확정되면 달력의 날짜는 의미가 없고 다만 '공격 예정 며칠 전' 또는 '공격 며칠 후'라는 개념만 남게 되는데, 공격 작전에 관한 문서에는 그 공격을 위한 각 부대의 준비 상황, 공격 방법, 공격 목표 등이 상세히 명시되지만 D-Day만큼은 별도로 시달 되는 것이 상례

다. 차후에 최고 지휘부에 의해서 D-Day는 몇 월 며칠날이라고 구체적 인 날짜가 통지된다.

공격 예정일을 전후로 해서 그 전은 마이너스(-), 그 후는 플러스(+)의 기호와 함께 D의 뒤에 숫자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공격 1일 전은 D-1, 공격 3일 후는 D+3이 된다.

그렇다면 'D-Day'라는 말이 최초로 쓰인 것은 언제일까.

바로 제2차 세계 대전 때부터였다. 연합군 측에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앞두고 날짜를 정해 놓은 뒤에 이것을 D-Day라고 했는데, 그 첫 D-Day는 1944년 6월 6일이었다.

현재는 D-Day라는 말이 군사 목적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널리 쓰인다. 대통령 선거나 월드컵, 올림픽, 수능 시험, 하물며 데이트 날에도 D-Day라는 말을 붙이곤 한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D-Day는 어떤 날인지? 얼마나 남았는지?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